

제 15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.

상법 제 365 조 및 회사 정관 제 16 조에 의거, 당사 제 15 기(2013.1.1 ~ 2013.12.31)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일 시 : 2014년 3월 28일(금) 오전 10시

2. 장 소 : 경남 창원시 성산구공단로 21번길 18, 두산엔진 기술센터 지하 세미나실

3. 회의목적사항

가.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

나. 부의안건

- 제 1 호 의안 : 제 15 기 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) 승인의 건
- 제 2 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- 제 3 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- 제 4 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- 제 5 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제 6 호 의안 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

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안내
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14 조 5 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실질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별도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간접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5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신분증

- 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), 대리인 신분증

※ 미지참시에는 주주확인이 불가하여 입장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별첨 : 1. 부의안건 현황 1부.

2014년 3월 13일



두 산 엔 진 주 식 회 사
대 표 이 사 김 동 철

직인
생략

별첨 1-1. 제 15 기 재무제표

※ K-IFRS 연결기준

연결대차대조표

(단위:원)

| 과 목 | 제 15 기(2013.12.31 현재) | 제 14 기(2012.12.31 현재)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자산총계 | 1,662,608,606,569 | 1,786,202,789,328 |
| Ⅰ.유동자산 | 489,182,921,302 | 641,107,650,470 |
| Ⅱ.비유동자산 | 1,173,425,685,267 | 1,145,095,138,858 |
| 부채와자본총계 | 1,662,608,606,569 | 1,786,202,789,328 |
| 부채총계 | 872,571,145,031 | 1,038,431,336,234 |
| Ⅰ.유동부채 | 538,142,916,959 | 717,758,282,817 |
| Ⅱ.비유동부채 | 334,428,228,072 | 320,673,053,417 |
| 자본총계 | 790,037,461,538 | 747,771,453,094 |
| Ⅰ.지배회사 소유주지분 | 790,037,461,538 | 747,771,453,094 |
| 1.자본금 | 69,500,000,000 | 69,500,000,000 |
| 2.자본잉여금 | 367,214,701,425 | 367,214,701,425 |
| 3.기타자본항목 | 355,389,958 | 397,167,523 |
| 4.기타포괄손익누계액 | 4,438,398,121 | (22,211,187,691) |
| 5.이익잉여금 | 348,528,972,034 | 332,870,771,837 |
| Ⅱ.비지배부분 | - | - |

연결손익계산서

(단위:원)

| 과 목 | 제 15 기(2013.1.1~12.31) | 제 14 기(2012.1.1~12.31)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Ⅰ.매출액 | 743,878,585,197 | 1,378,777,833,340 |
| Ⅱ.매출원가 | 691,241,404,734 | 1,223,596,496,060 |
| Ⅲ.매출총이익 | 52,637,180,463 | 155,181,337,280 |
| - 판매비와관리비 | 51,915,830,581 | 85,415,009,951 |
| Ⅳ.영업이익 | 721,349,882 | 69,766,327,329 |
| Ⅴ.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(손실) | (5,298,094,704) | 208,033,724,131 |
| Ⅵ.당기연결순이익(손실) | (5,236,332,135) | 190,379,558,432 |
| -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| (5,236,332,135) | 190,379,558,432 |
| - 비지배부분 | - | - |

연결자본변동표

(단위:원)

| 과 목 | 자본금 | 자본잉여금 | 기타 자본항목 |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| 이익잉여금 (결손금) | 비지배 지분 | 총계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2012.1.1 (전기초) | 69,500,000,000 | 367,214,701,425 | 135,447,961 | (2,717,688,995) | 139,551,271,739 | - | 573,683,732,130 |
| 전기변동 | - | - | 261,719,562 | (19,493,498,696) | 193,319,500,098 | - | 174,087,720,964 |
| 2012.12.31(전기말) | 69,500,000,000 | 367,214,701,425 | 397,167,523 | (22,211,187,691) | 332,870,771,837 | - | 747,771,453,094 |
| 2013.1.1 (당기초) | 69,500,000,000 | 367,214,701,425 | 397,167,523 | (22,211,187,691) | 332,870,771,837 | - | 747,771,453,094 |
| 당기변동 | - | - | (41,777,565) | 26,649,585,812 | 15,658,200,197 | - | 42,266,008,444 |
| 2013.12.31(당기말) | 69,500,000,000 | 367,214,701,425 | 355,389,958 | 4,438,398,121 | 348,528,972,034 | - | 790,037,461,538 |

연결현금흐름표

(단위:원)

| 과 목 | 제 15 기(2013.1.1~12.31) | 제 14 기(2012.1.1~12.31)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I.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| (60,044,666,048) | (188,836,015,707) |
| II.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| 6,839,553,197 | (45,171,885,562) |
| III.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| (41,703,846) | 3,570,847,127 |
| IV.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| 6,711,674 | (142,952,973) |
| V. 현금의 순증가(감소) | (53,240,105,023) | (230,580,007,115) |
| VI. 기초의 현금 | 94,835,220,141 | 325,415,227,256 |
| VII. 기말의 현금 | 41,595,115,118 | 94,835,220,141 |

※ K-IFRS 별도기준

대차대조표

(단위:원)

| 과 목 | 제 15 기(2013.12.31 현재) | 제 14 기(2012.12.31 현재)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자산총계 | 1,538,917,384,654 | 1,672,968,308,719 |
| I. 유동자산 | 486,070,488,542 | 633,297,122,185 |
| II. 비유동자산 | 1,052,846,896,112 | 1,039,671,186,534 |
| 부채와자본총계 | 1,538,917,384,654 | 1,672,968,308,719 |
| 부채총계 | 858,981,797,869 | 1,028,488,896,541 |
| I. 유동부채 | 527,886,844,781 | 710,931,856,014 |
| II. 비유동부채 | 331,094,953,088 | 317,557,040,527 |
| 자본총계 | 679,935,586,785 | 644,479,412,178 |
| I. 자본금 | 69,500,000,000 | 69,500,000,000 |
| II. 자본잉여금 | 367,214,701,425 | 367,214,701,425 |
| III. 기타자본항목 | 355,389,958 | 397,167,523 |
| IV. 기타포괄손익누계액 | 36,207,539,902 | (136,854,571) |
| V. 이익잉여금 | 206,657,955,500 | 207,504,397,801 |

손익계산서

(단위:원)

| 과 목 | 제 15 기(2013.1.1~12.31) | 제 14 기(2012.1.1~12.31)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I. 매출액 | 743,104,362,158 | 1,377,618,958,445 |
| II. 매출원가 | 691,062,379,511 | 1,224,471,146,479 |
| III. 매출총이익 | 52,041,982,647 | 153,147,811,966 |
| - 판매비와관리비 | 50,103,470,238 | 83,848,547,463 |
| IV. 영업이익 | 1,938,512,409 | 69,299,264,503 |
| V.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(손실) | (5,233,612,674) | 72,255,351,898 |
| VI. 당기순이익(손실) | (6,151,839,103) | 54,366,505,061 |

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

(단위:원)

| 과 목 | 제 15 기(2013.1.1~12.31) | 제 14 기(2012.1.1~12.31)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I.미처분이익잉여금 | 202,757,955,500 | 203,604,397,801 |
| 1.전기이월이익잉여금 | 203,604,397,801 | 149,881,810,599 |
| 2.당기순이익 | (6,151,839,103) | 54,366,505,061 |
| 3.보험수리적손익 | 5,305,396,802 | (643,917,859) |
| II.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| - | - |
| 1.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| - | - |
| III.이익잉여금처분액 | - | - |
| 1.이익준비금 | - | - |
| 2.배당금 | - | - |
| 3.임의적립금 | - | - |
| IV.차기이월이익잉여금 | 202,757,955,500 | 203,604,397,801 |

자본변동표

(단위:원)

| 과 목 | 자본금 | 자본잉여금 | 기타자본항목 |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| 이익잉여금 (결손금) | 총계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2012.1.1 (전기초) | 69,500,000,000 | 367,214,701,425 | 135,447,961 | (333,792,311) | 153,781,810,599 | 590,298,167,674 |
| 전기변동 | - | - | 261,719,562 | 196,937,740 | 53,722,587,202 | 54,181,244,504 |
| 2012.12.31 (전기말) | 69,500,000,000 | 367,214,701,425 | 397,167,523 | (136,854,571) | 207,504,397,801 | 644,479,412,178 |
| 2013.1.1 (당기초) | 69,500,000,000 | 367,214,701,425 | 397,167,523 | (136,854,571) | 207,504,397,801 | 644,479,412,178 |
| 당기변동 | - | - | (41,777,565) | 36,344,394,473 | (846,442,301) | 35,456,174,607 |
| 2013.12.31 (당기말) | 69,500,000,000 | 367,214,701,425 | 355,389,958 | 36,207,539,902 | 206,657,955,500 | 679,935,586,785 |

현금흐름표

(단위:원)

| 과 목 | 제 15 기(2013.1.1~12.31) | 제 14 기(2012.1.1~12.31)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I.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| (55,321,566,926) | (187,503,960,033) |
| II.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| 6,565,877,613 | (45,042,011,326) |
| III.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| (4,672,895,145) | 6,785,287,127 |
| IV.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| 8,789,716 | (30,350,523) |
| V. 현금의 순증가(감소) | (53,419,794,742) | (225,791,034,755) |
| VI. 기초의 현금 | 94,678,541,896 | 320,469,576,651 |
| VII. 기말의 현금 | 41,258,747,154 | 94,678,541,896 |

- 상기 내용은 회계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상기 내용은 요약 재무제표입니다. 주식 등 상세 내용과 확정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(<http://dart.fss.or.kr>)에 당사가 공시하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정관 일부 변경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행(변경전) | 변경(안) | 개정사유 |
|--|--|--|
| <p>제 2 조 (목적)</p> <p>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~ 3.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(생략)</p> <p>7. (생략)</p> <p>8.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 <p>9. (생략)</p> | <p>제 2 조 (목적)</p> <p>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해양플랜트용 기자재의 설계, 제조, 판매, 설치 및 개조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환경오염방지 시설의 설계, 제조, 판매, 설치 및 개조</u></p> <p>11. (현행과 같음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양플랜트 기자재사업 추가 ·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추가 |
| <p>제 6 조 (주식의 종류와 액면가액)</p> <p>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<u>기명식 우선주식</u>으로 하며, 1주의 금액은 1,000 원으로 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| <p>제 6 조 (주식의 종류와 액면가액)</p> <p>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<u>기명식 종류주식</u>으로 한다.</p> <p>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<u>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, 상환주식, 전환주식,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</u>으로 한다.</p> <p>③ 1주의 금액은 1,000 원으로 한다.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법 상 주식 종류 반영 및 주식의 혼합근거 마련 |
| <p>제 6 조의 2 (우선주식의 수와 내용)</p> <p>① <u>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,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발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⑤ <u>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.</u></p> <p>⑥ (생략)</p> | <p>제 6 조의 2 (배당우선주식)</p> <p>① <u>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(이하 "우선주식")을 발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법 상 주식 종류 반영 |
| <p>제 6 조의 3 (전환주식)</p> <p>① <u>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</u></p> | <p>제 6 조의 3 (전환주식)</p> <p>① <u>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(이하"전환주식")으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법 상 주식 종류 반영 · 상법 상 회사의 전환권 추가 |

| | |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전환조건,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시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④ 전환주식의 <u>주주가</u>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|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</u>, 전환조건,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시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④ 전환주식의 <u>주주 또는 회사가</u>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| |
| <p>제 6 조의 4 (상환주식)</p> <p>① 회사는 <u>이익배당우선주</u>의 발행시 이사회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<u>상환주식</u>으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 다만,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<u>우선주식</u>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, 조정사유,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⑦ (생략)</p> | <p>제 6 조의 4 (상환주식)</p> <p>① 회사는 <u>종류주식</u>의 발행시 <u>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</u> 이사회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<u>주식(이하“상환주식”)</u>으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 다만,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<u>상환주식</u>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, 조정사유,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| <p>· 상법 상 주식 종류 반영</p> |
| <p><신 설></p> | <p>제 6 조의 5 (의결권배제주식)</p> <p>① 회사는 <u>종류주식</u>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<u>2분의 1 범위 내에서</u>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<u>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우선주식</u>을 전항의 <u>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</u>으로 발행한 경우, 동 <u>우선주식</u>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<u>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.</u></p> | <p>· 상법 상 주식 종류 반영</p> |
| <p>제 8 조 (신주인수권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긴급한 자금조달, 재무구조의 개선, 기술도입,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제휴회사 또는 외국의 <u>합작법인</u>에게 발행주식총수의 <u>100분의 20</u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3.~ 4. (생략)</p> <p>5. 발행주식총수의 <u>100분의 20</u>을 초과</p> | <p>제 8 조 (신주인수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긴급한 자금조달, 재무구조의 개선, 기술도입,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, 제휴회사, 국내외 <u>합작법인</u>, <u>현물출자자</u> 및 <u>기타투자자</u> 등에게 발행주식총수의 <u>100분의 50</u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3.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발행주식총수의 <u>100분의 50</u>을 초과</p> | <p>· 신규 투자자 대상 범위 확대 등</p> |

| | | |
|--|--|---|
| <p>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(DR)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6. (생략)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| <p>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(DR)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| |
| <p>제 14 조 (전환사채의 발행)</p> <p>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<u>1,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</u>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기술도입 또는 기타의 필요에 따라</u> <u>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u></p> <p>3. <u>긴급한 자금조달, 재무구조의 개선,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<u>사채의 액면총액 중 500 억원은 보통주식으로, 500 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,</u>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 | <p>제 14 조 (전환사채의 발행)</p> <p>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<u>5,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</u>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긴급한 자금조달, 재무구조의 개선, 기술도입,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, 제휴회사, 국내외 합작법인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u></p> <p><삭 제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<u>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으로 하고,</u>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| <p>· 신규투자자 대상 범위 확대 및 상법 상 주식 종류 반영 등</p> |
| <p>제 14 조의 2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</p> <p>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<u>1,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</u>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기술도입 또는 기타의 필요에 따라</u> <u>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u></p> <p>3. <u>긴급한 자금조달, 재무구조의 개선,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</p> | <p>제 14 조의 2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</p> <p>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<u>5,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</u>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긴급한 자금조달, 재무구조의 개선, 기술도입,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, 제휴회사, 국내외 합작법인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u></p> <p><삭 제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</p> | <p>· 신규투자자 대상 범위 확대 및 상법 상 주식 종류 반영 등</p> |

| | | |
|--|--|------------|
| 500 억원은 보통주식으로, 500 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,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 ④ ~ ⑤ (생략) | 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으로 하고,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 ④ ~ ⑤ (현행과 같음) | |
| <신 설> | 부칙 제 1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14 년 0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. | 정관 시행시기 반영 |

별첨 1-3.

이사 후보자 약력

| 구 분 | 성 명 | 생년월일 | 주요약력 |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| 최대주주와의관계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| | 추 천 인 | | | |
| 사내이사 | 조남석 | 1959.10.05 | 고려대학교 식품공학 학사 前) 두산중공업(주) 상무 現) 두산엔진(주) 전무/CFO | 없음 | 계열회사 임원 |
| | | 이사회 | | | |
| 사내이사 | 선우명환 | 1955.11.07 |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現) 대우조선해양(주) 특수선사업기획 리더 | 없음 | 없음 |
| | | 이사회 | | | |
| 사외이사 | 박범훈 | 1948.04.12 | 日 무사시노음악대학원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前) 중앙대학교 총장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 現) 오케스트라아시아 상임지휘자 | 없음 | 없음 |
| | |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| | | |
| 사외이사 | 송호근 | 1956.01.04 | 美 하버드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 前) 서울대학교 대외협력본부장 現)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| 없음 | 없음 |
| | |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| | | |

※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임.

별첨 1-4.

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약력

| 성 명 | 생년월일 | 주요약력 |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| 최대주주와의관계 |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|
|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| 추 천 인 | | | | |
| 송호근 | 1956.01.04 | 美 하버드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 前) 서울대학교 대외협력본부장 現)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| 없음 | 없음 | 사외이사 |
| | 이사회 | | | | |

※ 감사위원의 임기는 사외이사 임기 종료 시까지임.

이사 보수한도

- 제 16 기(2014.1.1 ~ 2014.12.31) 이사보수 한도액 : 50 억원
- 제 15 기(2013.1.1 ~ 2013.12.31) 이사보수 집행액 : 16 억원
- 제 15 기(2013.1.1 ~ 2013.12.31) 이사보수 한도액 : 50 억원

주식매수선택권 부여

1. 부여주식의 종류 : 보통주
2. 부여대상자 : 김동철 등 6 명 ※첨부 1) “부여 대상자 및 부여 예상수량” 참조
3. 예상부여수량 : 31,700 주 (확정수량은 주총 전일 결정됨)
4. 행사가격 : 8,300 원 (확정가격은 주총 전일 결정됨)
※가격결정 방법: 전일 종가, 가중평균금액, 권면액(액면가액)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
5. 부여기준 : 개인별 평가결과에 따라 Grade 별 4 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
6. 부여방법 : 신주발행/자기주식교부/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중 행사 신청 시 이사회가 결정
7. 행사기간 및 조건
 -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 하며,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여야 행사할 수 있음
 - 단,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기준 2년 경과 전에 당해 임원이 사망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(정년 제외)로 퇴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. 이 경우 행사기간 개시 후 3월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하며, 당해 임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임원의 상속인이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
 -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일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함
8. 조정에 관한 사항
 - 상기 내용은 제 15기 정기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결의를 위하여 3월 4일 기준으로 산출계상 한 것이므로 부여대상자, 부여주식수, 행사가격 등은 주총 전일 기준일에 변경될 수 있으며, 확정된 내용은 주총일 당일 별도 자료로 배포할 예정임
 - 조정에 관한 사항(부여일 이후 유상증자, 주식배당, 준비금의 자본전입, 액면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로 행사 가격 및 수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)이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름
9. 기타사항
 - 상기 본 총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,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 따름

※ 첨부 1) 부여 대상자 및 부여 예상수량 (직위별 가나다순)

(단위 : 주)

| 직위 | 성명 | 부여수량 |
|----|-----|--------|
| 사장 | 김동철 | 10,000 |
| 상무 | 권순기 | 4,400 |
| 상무 | 박달우 | 4,500 |
| 상무 | 이운석 | 4,200 |
| 상무 | 임재철 | 4,200 |
| 상무 | 한진권 | 4,400 |
| 총계 | | 31,700 |